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842

발의연월일: 2025. 1. 24.

발 의 자:김 윤·전진숙·강득구

권칠승 · 서미화 · 한병도

장종태 · 모경종 · 김남희

김동아 • 이수진 • 조계원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에 대하여 폭행,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자가해당 아동의 보호자이면 해당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관련기관의취업에 제한이 있지만, 보호자가 아니면 이러한 제한이 따르지 않음.

이로 인하여 아동학대를 저지른 사람이 보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산후조리원 등의 시설에 아무런 제약 없이 근무 할 수 있음. 이같이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하고,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 호하기 위해서는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불문하고 아동에 대하여 상해, 폭행 등아동학대와 관련된 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이 해당 범죄자에 대하여아동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수 있도록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7호의3 신설 등).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취업제한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아동학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 1)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제1항·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2)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 제273조(학대, 존속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 3)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 중체포, 존속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

- 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 4)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1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 5)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의 죄
- 6)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 7)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 8)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 9)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10)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 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11)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 12)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 13) 1)부터 12)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1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아동학대 살해·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
-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아동학대관련범죄로"를 "취업제한아동학대관련범죄로"로,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취업제한아동학대관련범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아동학대관련범죄"를 각각 "취업제한아동학대관련범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중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중 "아동학대관련범죄"를 각각 "취업제한아동학대관련범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아동학대관련범죄"를 각각 "취업제한아동학대관련범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아동학대관련범죄"를 각각 "취업제한아동학대관련범죄"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취업제한아동학대관련범죄"로 한다.

제2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취업제한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한다.

제75조제2항 중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취업제한아동학대관련범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업제한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아동학대관련범죄에 관하여는 종전 제29조의3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9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선고된 취업제한명령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7이의 (처체코 가수)
1. ~ 7의2. (생 략)	1. ~ 7의2. (현행과 같음)
<u> <신 설></u>	7의3. "취업제한아동학대관련범
	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아동학대로서 다음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u>1) 「형법」 제2편제25장</u>
	<u>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u>
	7조(상해, 존속상해)제1항
	·제3항, 제258조의2(특수
	<u>상</u> 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제3항
	(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제1항, 제2
	<u>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u>
	(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
	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u> </u>
	 2)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
	11/17 5417 4 6 1/41

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 ,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제1항,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 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제1항, 제277조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 포, 존속중감금)제1항, 제2 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 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4)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 박, 존속협박)제1항, 제284 조(특수협박) 및 제286조 (미수범)의 죄 5)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 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 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 인, 매매, 이송 등 상해 · 치상)의 죄 6)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 7조(강간), 제297조의2(유 사강간), 제298조(강제추 행), 제299조(준강간, 준강 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 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 인·치사), 제302조(미성년 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3 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 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7)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 조(명예훼손), 제309조(출 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8)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 (주거·신체 수색)의 죄

9)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u>사를 방해하는 죄</u>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 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u>10) 「형법」 제2편제39</u>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 0조(공갈), 제350조의2(특 수공갈) 및 제352조(미수 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11)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 물손괴등)의 죄 12)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13) 1)부터 12)까지의 죄로 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14) 「아동학대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조(아동학대살해·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 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8. ~ 11. (생 략)]29조의3(아동관련기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 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 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 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 거나 집행이 유예 · 면제된 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 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 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 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 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 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 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 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 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

<u>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u> 의 죄

8. ~ 11. (현행과 같음)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
제한 등) ① <u>취업제한</u>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
제한아동학대관련범죄

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1. ~ 27. (생략)
- ②·③ (생 략)
- ④ 제1항 각 호(제12호 및 제2 2호는 제외한다)의 아동관련기 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 · 허 가 · 신고를 관할하는 중앙행정 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관 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 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 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 다. 다만, 아동관련기관을 운영 하려는 자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중앙행정 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 ⑤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

1. ~ 27.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4
취업제한아동학대
관련범죄
· 취업제한아
동학대관련범죄
취업제한아동
<u> </u>
<u> </u>
· (5)
⊎

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u>아동학대관련범죄</u> 전력을 확인하여야 하며,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u>아동학대관련범죄</u>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취업자등이 <u>아동학대관련범죄</u> 전력 조회를 기산서를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u>아동학대관련범죄</u>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u>아</u> <u>동학대관련범죄</u> 전력 조회 요 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u>아동학대관련범죄</u> 전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①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u>아동학대관련범죄</u> 전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 저 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

취업
제한아동학대관련범죄
취업제한아동학대관련범죄
· 취업제한아동학대관련범
최
<u>4</u>
리시 과러 시 드 컨 네 키 그 비 기
취업제한아동학대관련범죄
⑥ <u>취</u>
업제한아동학대관련범죄
취업제한아동학대관련범죄
⑦
취업제한아동학대관
런범죄
<u>.</u>
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
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

검・확인) ① 보건복지부	.장	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	장
은 <u>아동학대관련범죄</u> 로 취	업	제
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제	29
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	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을	운	영
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	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	하	卫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	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囙	0]
상 점검 • 확인하여야 한다.	•	

- 1. ~ 6. (생 략)
- ②・③ (생 략)

제75조(과태료) ① (생략)

- ②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제29 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u>아동학</u> 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④ (생 략)

검·확인) ①
취업제한아동학대관련범죄
1. ~ 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7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u>취업제</u>
한아동학대관련범죄
③·④ (현행과 같음)